

「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3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·김낙관·김민성·김영태·김춘남·박교상·
박세채·이정희·허민근 의원(9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3월 13일

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과 시민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설치규격,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홍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건축법」 등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시행중이나, 차수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권장 사항에 그침.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차수관 등 재해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